광주지방법원 2017. 4. 28 선고 2015나976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17. 4. 28 선고 2015나9765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5. 9. 15 선고 2015가단132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변론 종결2017. 3. 31.

판결 선고2017. 4. 28.

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5가단1326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2. 원고의 청구(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)를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9,967,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. 7. 1.부터 피고가 광주 북구 C 지상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1,876,1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5. 7. 1.부터 피고가 광주 북구 C 지상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1,876,1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광주 북구 C 전 58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1,633분의 925 지분에 관하여 2014. 2. 21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 후 원고는 2015. 3. 16.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1,633분의 708 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4. 2. 21.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신축하여,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.

다.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,633분의 925 지분에 대한 2014. 2. 21.부터 2015. 3. 15.까지의 임료 26,734,360원 중 2분의 1인 13,367,180원,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. 3. 16.부터 같은 해 6. 30.까지의 임료 13,199,840원 중 2분의 1인 6,599,920원 합계 19,967,100원(= 13,367,180원 + 6,599,920원)의 부당이득 반환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, 제1심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5. 5. 1. 이 사건 건물 중 B이 소유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. 4. 29.자 매매를

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소유한 2분의 1 지분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, 2015. 9. 24.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.

바.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2016. 1. 21. 제1심 승소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2015. 7. 1.부터 피고의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,876,1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.

사.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소유한 2분의 1 지분권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6. 4. 18. E에게 2016. 4. 15.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16. 4. 18.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·사용하고 있으므로,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,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·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 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2) 인정사실 가) 피고는 원고, B은, F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(광주지방법원 2015가합60520 사건, 이하 '관련 민사 사건'이라고 한다), 2016. 10. 7. 관련 민사 사건에서, 위 당사자들과 E(조정참가인)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(조정조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이고, 피고 A는 이 사건에서 원고이다).

조정조항

1. 조정참가인 E는 2016. 11. 4.까지 원고에게 150,032,900원을 지급하고, 원고는 피고 A와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며, 조정참가인 E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.

2.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며, 같은 법원 2016카정26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25,000,000원에 대한 원고의 회수청구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.

3. 원고는 제1, 2항이 각 이행됨과 동시에 광주 북구 C 건물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1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, 그 가처분집행을 해제한다.

4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나) 위 조정 성립 이후, 피고는 관련 민사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.

[인정근거]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을 제6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3)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(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다)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재영

판사권혁재

판사정주현